



인증은 빠르게, 시장출시는 성공적으로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제도



국가기술표준원
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국가산업융합센터
Korea National Industrial Convergence Center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제도가 무엇인가요?

야심차게 개발한 산업융합 신제품, 하지만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 인증을 받을 수 없어요.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제도가 융합 신제품의 인증 취득을 도와드립니다.

기존 인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서를 통해 융합 신제품의 날개를 달아주세요.

KC인증도 OK! KS인증도 OK!



인증 신청 대상

- 1 융합 신제품에 맞는 기준 등이 없어 인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2 기존 인증 기준을 융합 신제품에 적용할 수 없어 인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타겟인증이란 융합 신제품이 위와 같은 사유로 취득할 수 없는 기존 법적 인증(KC인증, KS인증 등)을 말합니다.

산업융합 촉진법 제11조(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의 신청)

1.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산업융합 신제품에 맞는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
2.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산업융합 신제품에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적합성 인증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 후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제출

-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신청서
- 첨부서류
 - [필수] 산업융합 신제품 설명서
 - [필수] 산업융합 신제품 융합성 증명자료(성능과 품질의 우수성 및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
 - [필수]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신청 사유
 - [선택] 관련 시험성적서 등

※ 소관 중앙행정기관이란 융합 신제품이 본래 취득하고자 했던 기존 법적 인증(타겟인증)을 관장하는 중앙부처입니다.

우리나라 주요 인증 제도를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

- 방호장치·보호구 안전인증: 고용노동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KS인증 및 단체표준인증: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어떻게 진행되나요?

1 신청상담

- ◎ 기업 → 국가산업융합센터
 - 애로사례조사서 제출
- ◎ 국가산업융합센터 → 기업
 - 전문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 의견 전달

-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신청 전 **융합 신제품이 적합성 인증 신청 대상에 해당되는지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 애로조사서를 제출해주시면 신청서류를 모두 작성하지 않아도 적합성 인증 신청 대상 여부를 먼저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신청상담 단계는 기업의 신청 여부 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신청 대상 해당 여부에 대해 관련 전문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검토 의견을 사전에 참고용으로 안내 드리는 단계입니다.

2 신청

- ◎ 신청기업 → 소관 중앙행정기관
 -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신청인은 **적합성 인증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제출합니다.

3 심사대상 여부 통보

- ◎ 소관 중앙행정기관 → 신청기업
 -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심사대상 여부 통지서 통지

적합성 인증 신청을 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은 적합성 인증 심사대상 여부와 심사에 소요되는 **예정 기간** 등을 신청기업으로 통지합니다.

4 적합성인증협의체 구성 및 적합성 인증 기준 마련

- ◎ 소관 중앙행정기관

소관 중앙행정기관은 적합성인증협의체를 구성하고 신청 제품에 **적합한 적합성 인증 기준**을 마련하여 **신청기업 및 적합성 인증 심사 기관**에 통보합니다.

- ※ 적합성인증협의체에서는 적합성 인증 기준, 적합성 인증 심사기관, 적합성 인증 절차, 적합성 인증 조건 등을 논의합니다.
- ※ 적합성 인증 기준은 타겟인증의 표준이나 기술기준을 토대로 신청 제품의 융합 특성을 고려하여 마련됩니다.

5 적합성 인증 심사

- ◎ 신청기업 → 적합성 인증 심사기관
- ◎ 적합성 인증 심사기관 → 소관 중앙행정기관

적합성 인증 기준을 통보받은 기업은 적합성인증 협의체에서 결정된 **적합성 인증 심사기관**에 인증 심사를 의뢰하고,

적합성 인증 심사기관은 적합성 인증 심사 진행 후 **인증 심사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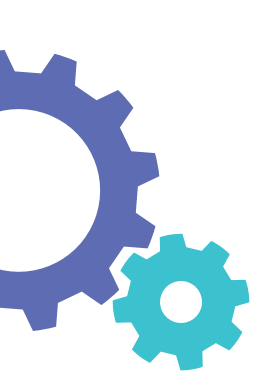
- ※ 적합성 인증 심사는 타겟인증의 심사 체계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 신청 제품별 타겟인증에 따라 공장심사, 제품 시험 검사, 인증위원회 등의 절차가 포함됩니다.

6 인증서 발급 및 기준 고시

- ◎ 소관 중앙행정기관 → 신청기업
 - 적합성 인증서 발급

적합성 인증 심사 결과 합격한 제품에 대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은 **적합성 인증서**를 발급하고, **적합성 인증 기준**을 고시합니다.

- ※ 적합성 인증서는 융합 신제품이 취득하고자 했던 기존 법적 인증(타겟인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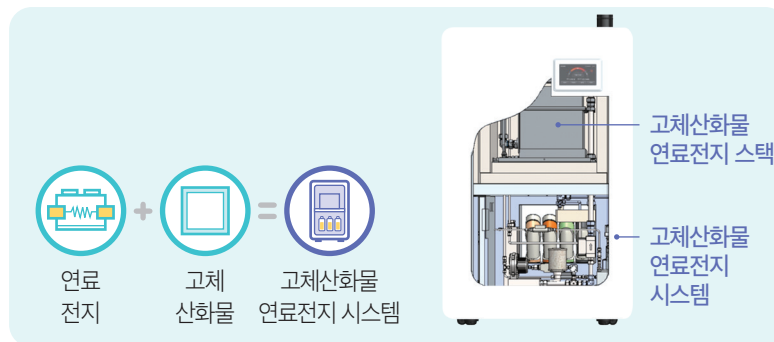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대표사례

고체산화물 연료전지(SOFC)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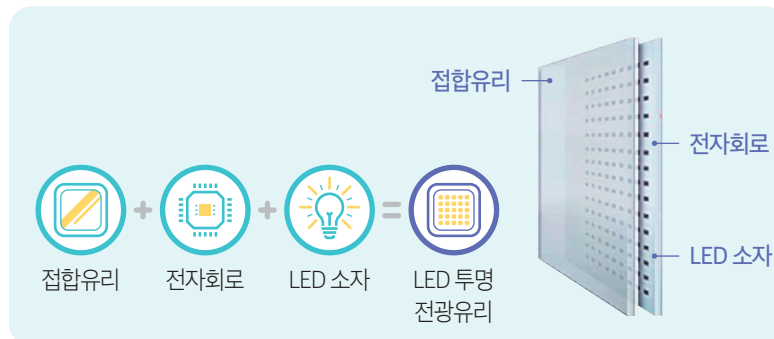
- **제품특징** 고체산화물을 전해질로 사용하여 기존 고분자 연료전지에 비해 구조가 간단하며 고효율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3세대 연료전지 시스템
- **애로내용**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PEMFC) 시스템 관련 기존 KS표준*으로는 고체산화물을 전해질로 사용하는 연료전지(SOFC) 시스템의 성능 및 안전성 등을 확인할 수 없어 KS인증 취득 불가
* KS C 8569(고분자 연료전지 시스템)
- **애로해소** KS인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취득, 적합성 인증 후 KS표준 개정



LED 투명전광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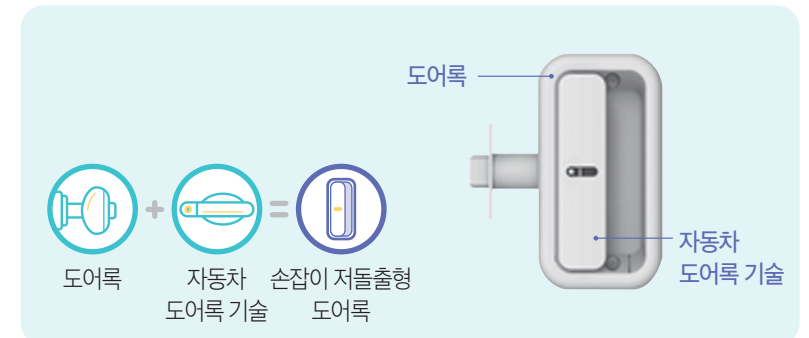
- **제품특징** 접합유리 사이에 LED를 삽입하여 디스플레이 기능을 융합한 제품
- **애로내용** 일반 접합유리 관련 기존 KS표준*으로는 LED가 융합된 접합유리의 광학 특성 및 전기적 안전성 등을 확인할 수 없어 KS인증 취득 불가
* KS L 2004(접합유리)
- **애로해소** KS인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취득



손잡이 저돌출형 도어록



- **제품특징** 건축용 도어록과 자동차용 도어록 기술을 융합한 제품으로 도어록의 손잡이 부분을 매립형으로 전환해 부딪침 등에 있어 사용자의 안전성을 높인 제품
- **애로내용** 건축용 도어록 관련 KS표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어록과 모양 및 구조가 달라 해당 KS표준으로는 매립형 도어록의 성능 및 내구성 등을 확인할 수 없어 KS인증 불가
* KS B 6411(원통형, 튜블러형, 상자형 도어록)
- **애로해소** KS인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취득



비행장 LED 노출형 유도로등



- **제품특징** 비행장 유도도로에 설치되는 등화시설로 할로겐 광원 대신 LED 광원을 사용하여 에너지를 절약하고 시인성을 높인 제품
- **애로내용** 비행장 유도로등 관련 기존 KS표준*은 할로겐 광원을 사용한 유도로등만 포함하고 있어 LED 광원을 사용한 비행장 유도로등은 KS인증 취득 불가
* KS W 5021(비행장 노출형 활주로등 및 유도로등)
- **애로해소** KS인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취득





인증 후 추가적인 혜택과 의무사항은 무엇인가요?



인증 혜택

✓ 적합성 인증 기준 마련을 통한 인증 취득 가능

인증 취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융합 신제품을 위한 별도의 인증 기준을 신속히 마련하여 인증 관련 애로 해소

* 인증심사 합격 후 타겟인증(KC, KS 등) 마크 표시 가능

추가 혜택

1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대상에 포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 세칙」 제3조

2

조달우수제품 심사 시 가점 부여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별지 제2호의2, 제2호의3)

3

신산업 진출 등을 위한 사업재편 계획 시 신산업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활용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 및 「사업재편계획실시지침」 제4조의2



인증 후 기업의 의무사항

✓ 보험·공제 가입

융합 신제품의 사용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보험·공제 가입

* 「산업융합 촉진법」 제16조 및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20조

** 타겟인증 및 적합성인증협의체 의결 결과에 따라 인증 제품별로 상이

✓ 사후관리 및 후속조치 등

[사후관리] 타겟인증의 사후관리 체계에 따른 정기심사 등 사후관리 준수

[후속조치] 타겟인증 관련 법령 및 표준 등의 제·개정 또는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 준수

[변경알림] 타겟인증에서 정한 인증 변동사항(주요 부품 등) 발생 시, 필요한 절차 준수

* 「산업융합 촉진법」 제13조 및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운영요령」 제13조 ~ 제15조

✓ 실적 보고

인증 제품의 연도별 판매실적 및 지원실적 등 실적 보고 제출

*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운영요령」 제21조



인증은 빠르게, 시장출시는 성공적으로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제도

국가기술표준원

Tel. 043-870-5502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산업융합센터

15588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항가울로 143

Tel. 031-8040-6831, 6832

<https://certi-icnp.kr/>